

인구감소시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분석

이덕난*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전망과 현 정부의 교육개혁 목표, 미래 교육개혁의 방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교육조례 제정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유·초중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의회는 일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소관의 고등교육 격차 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대학과 지자체, 시·도교육청, 초·중·고교 간의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의회는 시·도교육청과 관내 대학 간의 교육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학령인구, 인구감소, 교육의 질, 수월성, 지방의회

투고일 : 2022.12.12. 심사 마감일 : 2022.12.23. 최종 게재 확정일 : 2022.12.24.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원, dnlee@assembly.go.kr

I. 들어가며

인구감소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020년 현재 5,184만명에서 향후 10년간은 연평균 6만명 내외로 감소해 2030년 5,12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70년에 3,766만명(1979년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만 15-64세)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30년 3,381만명으로 감소하고, 2070년에는 1,737만명으로 2020년 대비 46.5% 수준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에 따라 학령인구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늘려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는 다른 측면의 논의도 요구된다. 학령인구 감소시대에 부합하는 교육개혁의 방향을 마련하고, 그 개혁 방향에 따라 교육재정의 확보 및 배분을 포함한 정책 및 입법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도래한 학령인구 감소시대에는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지역에 적합한 인재를 확보하고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부문과 민간 부문,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 간의 연계-협력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전망과 현 정부의 교육개혁 목표, 미래 교육개혁의 방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지방의회에 요구되는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관련 교육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학령인구 감소시대 교육개혁의 방향

1. 학령인구의 감소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만 6-21세)는 2020년 789만명에서 향후 10년간 195만명이 감소하여 603만명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대학교 학령인구(18-21세)는 2020년 241만명에서 2030년 187만명으로 2020년의 77.7%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만 6-11세)는 2020년 272만명에서 2030년 159만명으로 2020년의 58.5%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표 1〉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 학령인구(6-21세) 추계

구분	2020년 추계	2030년 추계	2020년 추계 대비 비율
6~21세 학령인구 전체	789만명	603만명	76.4%
초등학교(6-11세)	272만명	159만명	58.5%
중학교 (12-14세)	136만명	115만명	84.4%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	139만명	132만명	95.3%
대학교 학령인구(18-21세)	241만명	187만명	77.7%
대학진학대상 18세 인구	52만명	47만명	90.9%

자료: 통계청. 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p.14.

그리고 50년 후인 2070년에는 학령인구(만 6-21세)가 328만명으로 2020년의 41.5%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대학교 학령인구(18-21세)는 2070년 101만명으로 2020년의 41.9%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초등학교 학령인구(만 6-11세)는 2070년 109만명으로 2020년의 40.0%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전체 학령인구와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학령인구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030년에 급감하나, 2030년 159만명에서 2040년에 181만명으로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1〉 학령인구 연령구조(2020~2070년)

자료: 통계청, 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p.14.

2. 현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 목표

현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에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교육부),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교육부),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교육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교육부)” 등 5가지(81~85번)가 제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에는 “대입제도 개편,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AI 기반 기초학력 제고, 융합인재 양성,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 학습·경력관리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제도로 전환” 시키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에는 “지자체 권한 강화, 지역인재 투자 협약제도, 수요맞춤형 교육, 지역 거점대학(원) 육성,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대학-지자체-산업 간 협력으로 지역위기 극복 및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직까지 현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 방향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지난 2022년 5월 16일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교육 개혁을 포함한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이 새 정부의 중점 개혁과제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직접 열거하지는 않았으나, 취임 직후부터 공정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초등전일제 교육, 자사고 유지, 전수 학력평가 시행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교육 개혁의 목표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과 성장 지원”, “대학-지자체-산업 간 협력으로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이다. 또한 다른 국정과제에서 도출되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공급”, “모든 유아·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등도 목표로 볼 수 있다.

3. 미래 교육개혁의 방향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헌법」은 수월성과 보편성의 조화를 주문하였다. 교육에서의 평등성(equality) 또는 보편성은 교육 기회나 자원의 배분이 교육대상 집단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김경근 2006). 그리고 수월성(excellence)의 사전적인 의미는 ‘뛰어남’ 또는 ‘빼어남’이다.

그동안 수월성 교육에 대해 소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그 학생들을 선호도 높은 상급학교나 기업으로 입학 또는 취업시키는 개념으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가드너(Gardner 1961)의 개념 정의처럼 모든 학생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최고를 지향하는 것으로 수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김철수(2002)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평준화교육으로 여기는 것은 오해이며, 우리 헌법은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최고의 목표로 제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헌법」 전문의 정신에 따라 모든 학생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월성 제고를 교육의 지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모든 학생의 수월성 제고에 대한 「헌법」 전문의 근거는 학령인구감소 시대에 있어서도 유효하며, 미래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삼을 만하다. 학생 한명 한명이 소중한 학령인구감소 시대에는 모든 학생의 성공을 지원하며 교육을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정책과 법제, 재정 등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Ⅲ.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관련 교육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1.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유·초중등 교육의 질 제고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 볼 때, 여기에서의 ‘지역’은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별 또는 시·군·구별 등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육 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3항은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2021년 9월 24일에 신설되었으며, 신설 목적에 대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학습 공백에 따른 학생 간 교육 격차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교실 방역, 거리두기가 가능한 대면 수업 및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있으므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 볼 때,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정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에 대해 국가 수준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실현 시책의 수립·시행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7월 29일에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상위 약 20% 수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향후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단계적 감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이덕난 외 2022). 이를 참고하면 국가 수준에서 설정하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28명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초·중·고교 전체 23만 3,345개 학급 중 23.2%(5만 4,050학급)이다.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도 전체학급 중 12%(2만 8,127학급)이며, 이 중 1/2 이상이 중학교(1만 5,786학급)에 있다.

이처럼 과밀학급은 시·도별, 지역별, 학교별 격차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과밀 해소 정책 추진 및 연도별 실적을 국회 및 시·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적정 교원 수의 확보와 학급 등 교육시설의 확충이다. 이 가운데 정규의 교원 정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행정안전부와 기재부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지방의회가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학급 등 교육시설의 경우에도 학교 신설을 통한 확보 방법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지방의회가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건축비 등이 일정 금액 이상 소요되어 중투심을 거쳐야 하는 신설 외의 방안을 통해 학급 등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하다.

그러므로 「교육기본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 간의 교육 여건 격차 해소 및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실현을 위한 지원 조례

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도교육청이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해당 시·도의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 해소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집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일반 지자체의 참여 및 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

2. 교육청-지자체의 고등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앞에서 살펴본 「교육기본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 간의 교육 여건 격차 해소 시책 마련의 대상에는 대학 등 고등교육 분야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교육부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및 일반 지자체도 고등교육의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방의회에서 고등교육의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 해소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할 수 있다.

현행 교육격차 해소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시·도의회는 대구광역시의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강원도의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건이 있다. 시·군·구의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취약계층 교육격차해소사업 지원 조례」, 전라북도 무주군의 「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등 2건이 있다.

일반 지자체 소관의 대구광역시 조례와 강원도 조례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를 지원 범위로 규정하였다. 교육청 소관의 부산광역시 조례도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일반 기초지자체 소관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경우에는 해운대구 관내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격차해소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지원 대상은 초·중·고교 자녀이다. 무주군의 경우에도 초·중·고교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일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소관의 고등교육 격차 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등교육 격차

해소 지원 대상을 개별 대학 기관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며, 해당 지자체 내에서의 지역·학생 간의 고등교육 격차 또는 고등교육 접근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2년 3월 25일에 시행(2021.9.24. 제정)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원격교육법”이라 한다)은 원격교육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자치구) 시·도 교육청을 말함. 이하 같음)는 원격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광역 및 기초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해당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원격교육에는 고등교육에서의 원격교육도 포함된다.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장애학생 등 원격교육 취약계층 참여 지원에 대해서도 고등교육이 포함된다.

그리고 「원격교육법」 제15조(대학 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1. 원격교육콘텐츠 및 관련 기술 개발, 2. 원격교육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시설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대학 등의 원격교육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은 대학 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에 지원할 수 있다.

이에 지방의회에서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원격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 원격교육 취약계층 참여 지원, 대학 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 등에 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할 수 있다. 일반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고등교육 원격교육 등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원격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 정부의 핵심적인 교육 분야 국정과제에는 ‘[81번]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국정과제의 목표는 “디지털·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적기 양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SW·AI 및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 인재양성은 “대학 내·외의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및 메타버스·반도체 인재양성”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결손인원 등을 활용한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 및 대학원 정원기준 유연화, 대학 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위해 대학 내 부트캠프 설치, 산업계 수요 기반 및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대학 간 공유체계 활성화”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은 주로 반도체 등 핵심적인 분야의 인재양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모든 학생들의 디지털·AI 역량을 육성하고, 이를 자신의 학습과 진로에 디지털·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까지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공지능(AI)교육은 ‘인공지능 이해교육’과 ‘인공지능 융합교육’으로 구분된다. ‘인공지능 이해교육’은 인공지능 내용교육, 소양교육, 윤리교육이 포함된다. ‘인공지능 융합교육’은 내용적 융합교육(교과융합)과 방법적 융합교육(AI활용교육)이 포함된다(정제영 2022).

이에 초·중·고교와 대학에서의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시·도교육청과 일반 지자체는 앞에서 제시한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융합교육 및 그것을 위한 교사 및 교원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도교육청은 초·중·고교의 인공지능교육을 위해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 내의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학 내의 인공지능교육 및 지역 내 초·중·고교의 인공지능교육, 나아가 지역주민 대상의 인공지능교육 등을 위해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지

방의회는 대학과 지자체, 시·도교육청, 초·중·고교 간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교육청-대학 간의 교육 협력 제도화 조례 제정 논의 필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2022.10.11.)하였다. 이는 지방의회가 시·도교육청과 관내 대학 간의 교육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 사례로 평가된다.

제주의 사례는 고교학점제, 영재교육, 대학 진학 연계, 교원연수, 지역이해 교육 등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청과 관내 대학과의 연계협력 필요성에 대해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주의 경우 참여 대학들은 “도내 학생이 해당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와 교육적 투자가 필요하고, 제주가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대학 간의 연계를 넘어 도청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로 간에 논의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 관련 조례가 제정된다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좌용철 2022).

이는 고교학점제와 자유학기제 등 중·고등학교의 주요 정책과 대학 학점 선이수제도 등 고교-대학 간 연계가 필요한 정책을 해당 시·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관내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활성화시키는 조례 제정 시도로 평가된다. 이러한 교육청-대학 간의 교육 협력 제도화에 대한 사항을 지방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 그리고 취업 및 창업, 해당 지역 정주 등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안정적 지역인재 육성체계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IV. 나오며

지금까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예측 결과와 미래 교육개혁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학령인구감소 시대에는 모든 학생의 성공을 지원하며 교육을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정책과 법제, 재정 등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교육조례 제정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방의회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유·초중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정규의 교원 확보와 학교 신설을 통한 학급 등 교육시설 확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한계가 있으나, 그 외의 교원 및 학급 시설 확충 방안을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가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의회는 일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소관의 고등교육 격차 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대학과 지자체, 시·도교육청, 초·중·고교 간의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시·도교육청과 관내 대학 간의 교육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방의회가 해당 지역의 초·중등교육은 물론이고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지원과 관심을 확대한다면,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구감소시대에 모든 학생의 성공을 지원하며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

이덕난 외. 202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확대 정책의 쟁점 및 개선 과제 연구.” 『교육법학연구』 34(2), 91-120.

정제영. 2022. “모든 학생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미래교육의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 발표문.

좌용철. 2022. “제주도교육청-대학 간 교육 협력 제도화 조례 제정 ‘시동.’” 『제주의 소리』 (2022.10.11.) (검색일: 2022.10.1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통계청. 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Analysis of the Role of Local Councils in Improving the Quality of Education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Deok Nan Lee*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erspective of school age population decline and the direction of future education reform were analyzed. And the role of local councils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was studi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local councils need to actively improve the quality of preschool,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by reducing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Second, local councils need to promote the enactment of ordinances to support bridging the gap in higher education under the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to support distance education, and ordinances to support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between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s, and education offices.

Third, local councils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enactment of ordinances to support educational cooperation betwee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local universities.

Keywords : School Age Population, Population Decline, Quality of Education, Excellence, Local Council

* Legislative Researcher,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dnlee@assembly.go.kr